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63호 2019. 9. 9(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3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0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 4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4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4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7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6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71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 70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3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액 20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자.
2.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납세자

3.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인천

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1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최근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은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

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영세·성실기업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면세점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

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2)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시작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3) 세무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7)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 8)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9)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10)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1)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여야 하며,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12)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는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하기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압수·영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 치 사 유						
예 치 기 간	년 월		일부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p>○ 법 인 명 : (인)</p> <p>○ 대 표 자 :</p> <p>○ 법인소재지 :</p> <p>○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p> <p>○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p> <p>○ 연 락 처 :</p> <p>○ e-mail(담당자) :</p>	<p>법인유형</p> <p>제 조 업 ()</p> <p>건 설 업 ()</p> <p>판 매 업 ()</p> <p>운 송 업 ()</p> <p>기 타 ()</p>	<p>주요목적사업</p>
---	--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97mm×210mm, 가로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3개년) 및 각 서식 작성시 인천광역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3년분 작성)

※ 작성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세무조사팀)
우편번호 : 22726

※ 문의사항 전화 : (032)- FAX) 03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4)),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시설물·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각 사업연도별 법인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 서식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매년 7월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사업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

- 자본금 및 종업원수는 매년 7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① 정당 세액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5조 제2호에 의한 세액 기재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자본금 (a)	종업원수 (b)	정당 세액 (c)		기납부 세액 (d)		차인세액 (e)(c-d)	
명칭	소재지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사업소 소재지, 명칭, 연면적 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 ① 과세제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과세제외 내역 :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a)	①과 세 제 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액 (d)	기납부 세 액 1.1.1.1.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b)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종업원수 산정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국외근무자 제외, 수시 고용종업원 포함)

※ 수시고용 종업원수 산정방법 :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수

④ 산출세액

- 0000년까지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0000년이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

0000년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과세소득															
	㉡소계														
③ 종업원수	상시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 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소득세 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 타 : 예) 기타소득, 연금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 법인세법 73조, 98조 :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text{합계(과세표준액)} \times \text{「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세율}$

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0000년	사업장	인천광역시 군구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	-------	-----	-------------------------------	------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²×210mm², 가로서식)

※ 서식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작성요령

○ 매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종원업수, 사업장 연면적은 각각 인천시 관내 전체와 전국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을 작성
- 사업장별 안분비율은 전국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에서 인천시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의 비율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재

① 정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항에 의한 세액 기재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인천비율) (%)	법인세	정당 세액 ①	기납부 세액 ②	차인 세액 ③(①-②)
명칭	소재지	사업 개시일	(인천) 종업원수 (명)	(전국) 총종업원수 (명)	(인천) 사업장 (㎡)	(전국) 총사업장 (㎡)					

(297mm×210mm, 가로서식)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33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9.0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9-0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5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33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65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80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64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74 (백석동)	20171025	한들지구의 서쪽에 위치	
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67, 958-50, 958-51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2-20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0-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42-2 (오류동)	20090922	오류로1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항내로173번길 20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결합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3-1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11-21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19-09-09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단풍로62번길 46-12 (오류동)	중봉대로 공사	20090922	단풍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단풍로62번길 46-23 (오류동)	중봉대로 공사	20090922	단풍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빈공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70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명 :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2. 목 적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적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 9,900원(시급)
 - 생활임금 적용항목 : 기본급+제수당(통상임금)
 -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제수당 포함(단,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 수당 제외)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5. 기 타

- 서구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 : 사회적경제일자리과(일자리정책팀, 560-086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대표 배일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 나. 대지면적 : 52,663.36㎡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59,211.9491㎡ (지하4층, 지상47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1,789세대, 오피스텔 1개동 529호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1,017,342,502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3. 01. 31.
5. 변경사항
 - 가. 사업주체 변경[디에스네트웍스(주) → 아시아신탁(주)]

나. 사업기간 변경(2019.09.01.~2023.01.31. → 2019.10.01.~2023.01.31.)

다. 사업비 변경(979,657.37천원 → 1,017,342,502천원)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19-14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6호선), 사업명 :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6호선)사업
 - 【명칭】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6호선) L=216m, B=3m 중
금회 개설 L=164m, B=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서구 원당동	810-13	도	1577.5	48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삼 곡동 244)				
계				1577.5	48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2019. 09.



인천광역시
서구청

목 차

I . 실시계획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편입용지조서 및 용지도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지장물조서 및 지장물도(해당없음)
6.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별첨)

II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별첨)

1. 산지전용협의서류(별첨)

I . 실시계획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편입용지조서 및 용지도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지장물조서 및 지장물도(해당없음)
6.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별첨)

1. 위 치 도

위치도



2. 사 업 계 획 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명칭

-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

2. 사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원당지구 내 보행자도로 소3-16호선을 개설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의 위치

구 분	기 점	종 점
소로3-16호선 (원당동 810-13)	소로 1-1호선 (원당동 산117-7)	중로 2-173호선 (원당동 산121)

4. 사업 현황

-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소로	3	16	3	특수 도로	216	소로 1-1 (원당동 산117-7)	중로 2-173 (원당동 산121)	보행자 전용 도로	1999.6.23.	

5. 사업개요

- 1) 사업규모

구 분	연 장 (L)	폭 원 (B)	시행면적(m ²)
소로3-16호선	164m	3.0m	487m ²

2) 공사개요

- 가) 토 공 : 흙깎기 362m³, 터파기 103m³, 사토 371m³, 흙쌓기 10m³, 되메우기 76m³,
 벌목 및 벌개제근 779m²
- 나) 배 수 공 : 측구수로관(300X300) 36m, 배수관(D300) 6m
- 다) 구조물공 : 조경석쌓기 74m², 난간기초(H=700) 148m, 계단(B=1.0m, 500X150) 24m
- 라) 포 장 공 : 흙콘크리트포장(T=10cm) 332m², 콘크리트포장(T=15cm) 30m²,
 경계석(120X150) 129m
- 마) 목재데크공 : 목재데크(T=25mm) 37m²
- 바) 부 대 공 : 교통표지판 1개소, 핸드레일난간 74경간, 메쉬웬스 72경간,
 블라드 4EA, 스노우멜팅 시스템 1식
- 사) 전 기 공 : 보안등 설치 8EA

6.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공 사 비	179	179	-

2) 자금조달방안

- 사업비 재원 : 2019년도 제2회 추경 시비 보조금(市도시개발계획과-6059호, 2019.7.11.)

7.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0년 6월 30일

8.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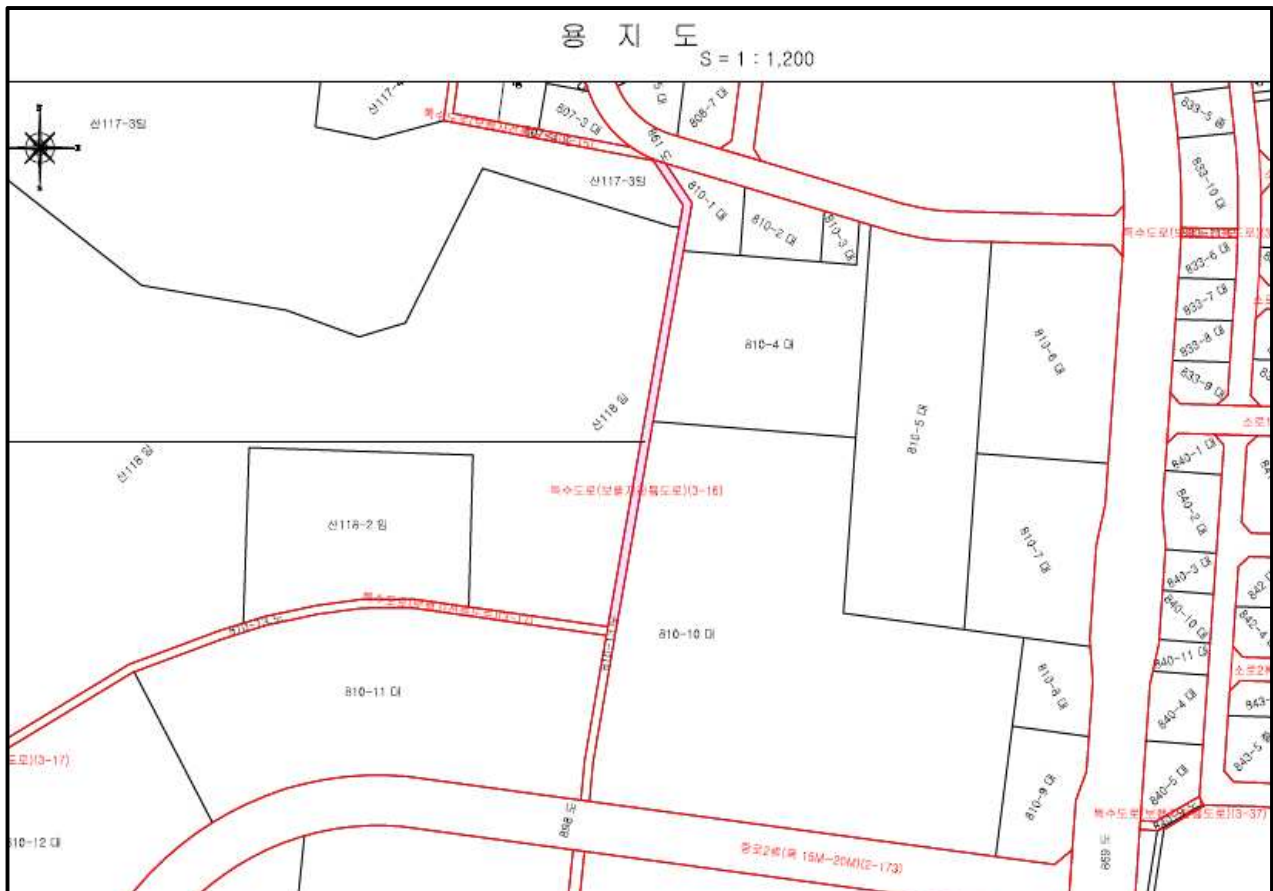
3. 편입토지조서 및 용지도

1) 편입토지조서

■ 용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원당동	810-13	도	1577.5	487	인천광역시서구					

2) 용지도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2)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1249-2011-005013



[토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3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1년4월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3	도로	1577.5㎡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1년4월28일 제32567호		소유자 인천광역시서구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9년 7월 1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4201120092090710101101010JM0050508ENG11353141112

발급확인번호 AAYH-VSDH-0131

발행일 2019/07/10

5. 지장물조서 및 지장물도(해당없음)

6.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별첨)

- 1) 현황측량도
- 2) 표준횡단면도
- 3) 종평면도
- 4) 횡단면도
- 5) 보안등설치 평면도

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별첨)

1. 산지전용협의서류(별첨)

1. 산지전용협의서류(별첨)

관련기관(부서)별 협의내용

관련기관(부서)		협의 내용	협의 의견	반영결과
서구청	도시기반과	- 보행자도로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과 관련한 기타 의견		
	교통정책과	- 교통안전시설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과 관련한 기타 의견		
	안전총괄과	- 방법 CCTV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과 관련한 기타 의견		
	공원녹지과	- 산지전용협의를에 관한 사항(별도 첨 부) - 실시계획과 관련한 기타 의견		
	검단출장소	- 보행자도로시설, 보안등설치 등에 관 한 사항 - 실시계획과 관련한 기타 의견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	- 실시계획과 관련한 기타 의견		
관련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	- LH사업 구간 개설공사 계획에 관 한 사항 - 실시계획과 관련한 기타 의견		

의견서

일 시	2019.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원당지구 소로3-16호선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9-147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9.09.09. ~ 2019.09.23.(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86무2667외 13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86무2667	오*금	2019.08.30	
2	41노2684	이*준	2019.08.30	
3	07어3550	김*곤	2019.08.27	
4	인천33더7410	구*	2019.08.27	
5	67부2596	김*연	2019.08.21	
6	34조5135	염*만	2019.08.20	
7	32마5483	유*호	2019.08.20	
8	인천7라2819	김*한	2019.08.19	
9	27루7868	박*호	2019.08.19	
10	54우6011	김*석	2019.08.12	
11	60누7925	조*주	2019.08.10	
12	80고1052	백*호	2019.08.08	
13	46수2212	하*준	2019.08.07	
14	41조3971	강*후	2019.08.0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1471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 · 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6차) 및 실시계획(변경, 3차)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가. 명 칭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변경없음)
- 다. 면 적

구분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933,916	감) 109	933,807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의 예정 지적좌표 결정(변경)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

라. 시행기간 : 2006. 8. 28. ~ 2020. 12. 31.(변경없음)

마.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933,916	100.0	933,807	100.0	감) 109
주 거 용 지	93,204	10.0	92,259	9.9	감) 945
상 업 용 지	387,010	41.4	380,732	40.8	감) 6,278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451,477	48.3	458,591	49.1	증) 7,114
기 타 시 설 용 지	2,225	0.2	2,225	0.2	-

○ 기타사항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경없음)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과(☎440-4512)

인천광역시 서구 미래기획단(☎560-590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560-304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560-3071)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의견서(서면) 제출

4. 기타

○ 「도시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주요 변경사항

2019. 09.



[도시개발계획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주요사항

I 개발계획(변경)

1] 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위치와 면적

- 명 칭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변경없음)
- 면 적

구분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933,916	감) 109	933,807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의 예정 지적좌표 결정(변경)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 가정5거리 일원의 복합개발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인천 서북부 지역 원도심 도시재생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청라국제도시, 영종신도시, 가정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경인고속도로, 청라진입도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BRT 등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를 반영 연계하여 가정5거리 주변 교통난 해소

3.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6년 8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4.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2] 부문별 계획

1. 인구수용계획

- 인구 및 주택배분계획(변경없음)
 - 구역 경계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상복합용지의 주거비율을 80% 미만으로 적용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95,112	294,983	100.0	9,521	23,993	-	
공동주택	73,462	73,333	24.9	2,037	5,133	220 ~ 280	
60m ² 이하	25,035	24,909	8.5	831	2,094	220 - 280	
60 ~ 85m ² 이하	48,427	48,424	16.4	1,206	3,039	280	
85m ² 초과	-	-	-	-	-	-	
주상복합 ¹⁾	221,650	221,650	75.1	7,484	18,860	420 (주거:90%미만)	

주1)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상복합용지의 주거비율을 80% 미만으로 적용

2. 토지이용계획

가. 주거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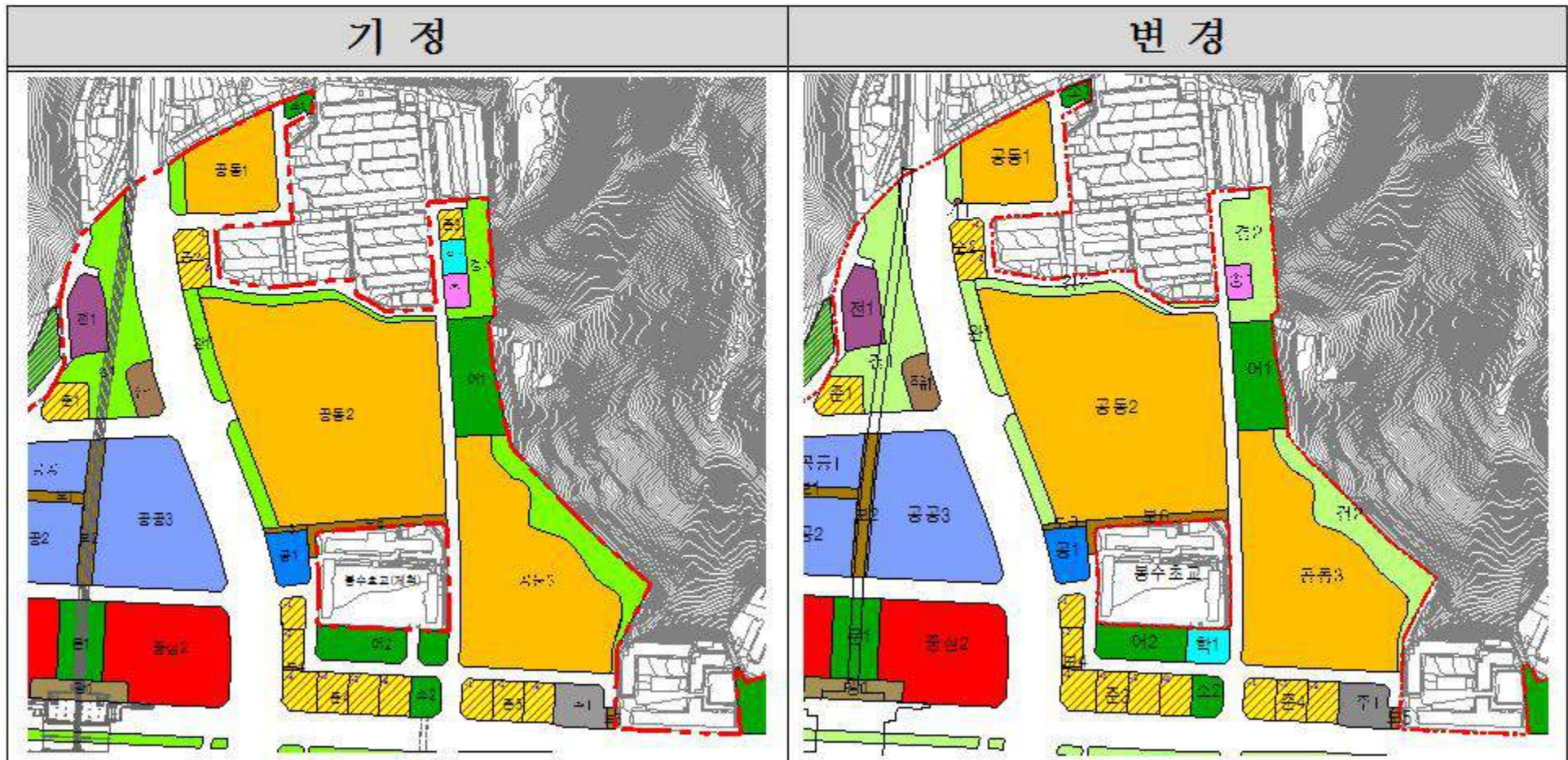
■ 준주거시설용지

- 구역 경계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준주거시설용지 면적 변경
- 공원/녹지 면적 추가확보를 위하여 준주거3을 경관녹지로 변경
 - (기정) 6개 가구 18획지, 면적 : 19,942m²
 - (변경) 5개 가구 17획지, 면적 : 18,926m² (감 816m²)



■ 공동주택용지

- 구역 경계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기정) 73,462㎡ → (변경) 73,333㎡ (감 129㎡)



나. 상업용지

■ 상업업무용지

- 지구내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하여 대상자들로부터 소규모 필지 공급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대규모 필지에 대한 공급 리스크 등을 해소하여 상업용지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상업1, 2를 중·소규모의 획지로 분할 및 도로(5개노선) 신설
 - (기정) 1개 가구 2획지, 30,556㎡, 획지구모 : 14,798 ~ 15,758㎡
 - (변경) 3개 가구 15획지, 25,651㎡, 획지구모 : 933 ~ 2,740㎡



■ 공공복합업무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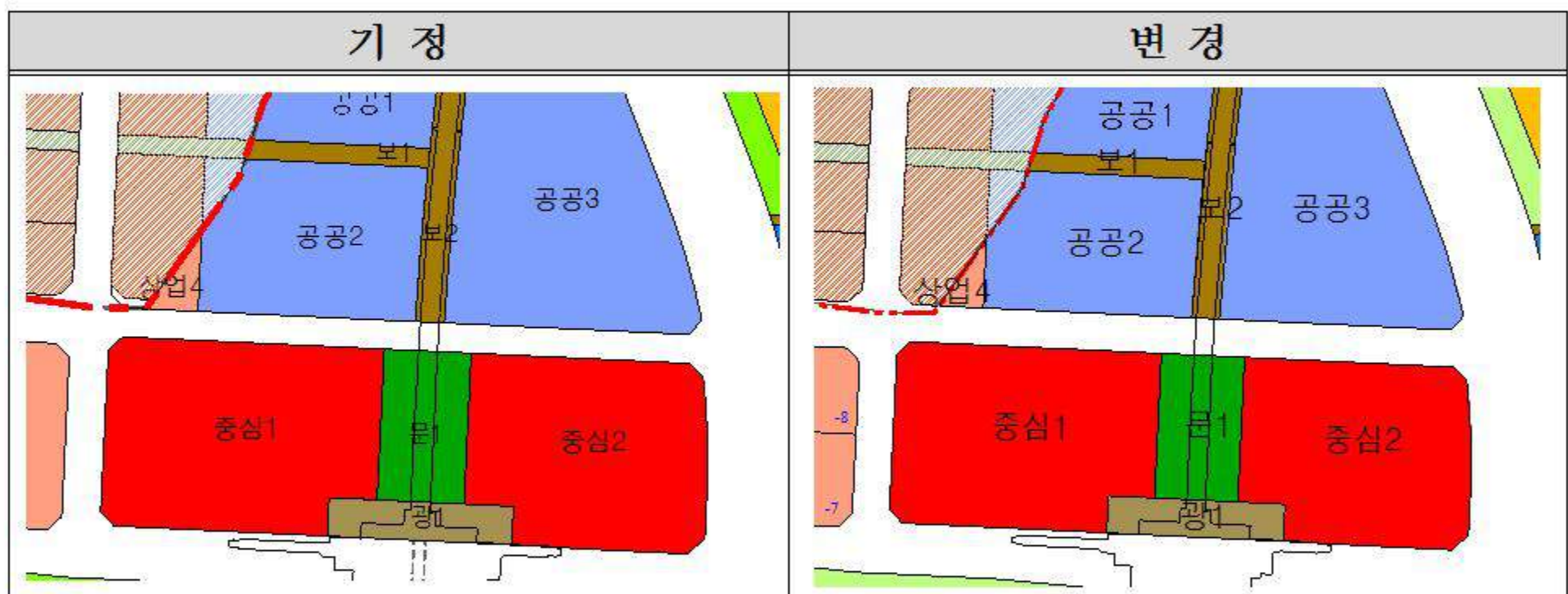
- 공공복합업무용지 남측 도로(중로2-907호선) 폭원 변경(15m→20m)에 따라 공공복합업무용지(공공2, 공공3) 면적 변경
- (기정) 28,345㎡ → (변경) 27,114㎡ (감 1,231㎡)



다. 도시기반시설용지

■ 도로

- 중심상업용지 및 공공복합업무용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하고자 중로2-907호선 도로폭원 확폭
- (기정) 중로2-907호선 : 폭원 15m, 연장 307m
- (변경) 중로1-666호선 : 폭원 20m, 연장 30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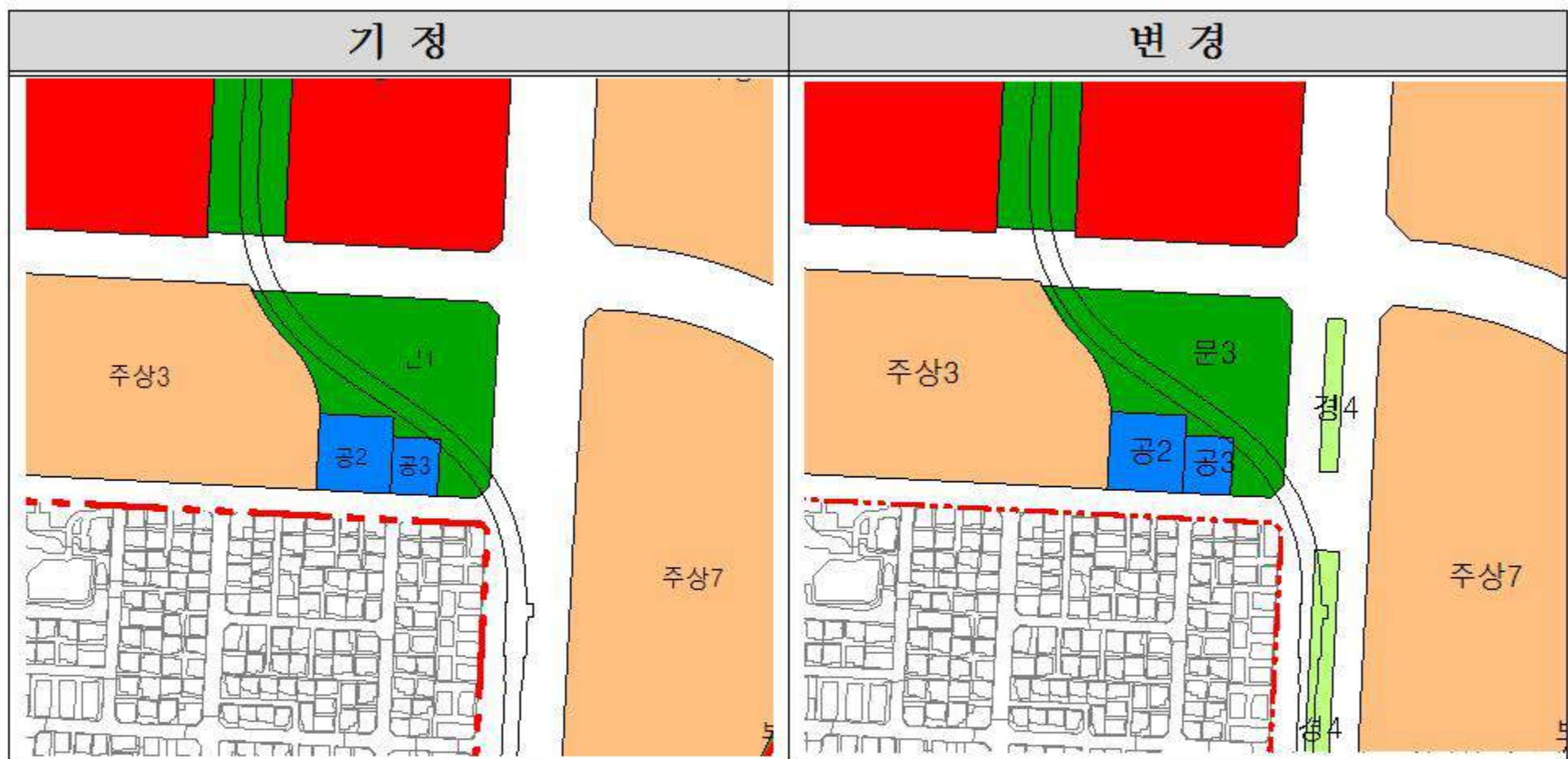


- 상업1,2블록의 가구 및 획지 분할에 따라 도로 5개노선 신설
 - (신설) 중로 2개노선, 폭원 12m, 연장 42 ~ 309m
 - (신설) 소로 3개노선(보행자전용도로), 폭원 6m, 연장 39 ~ 4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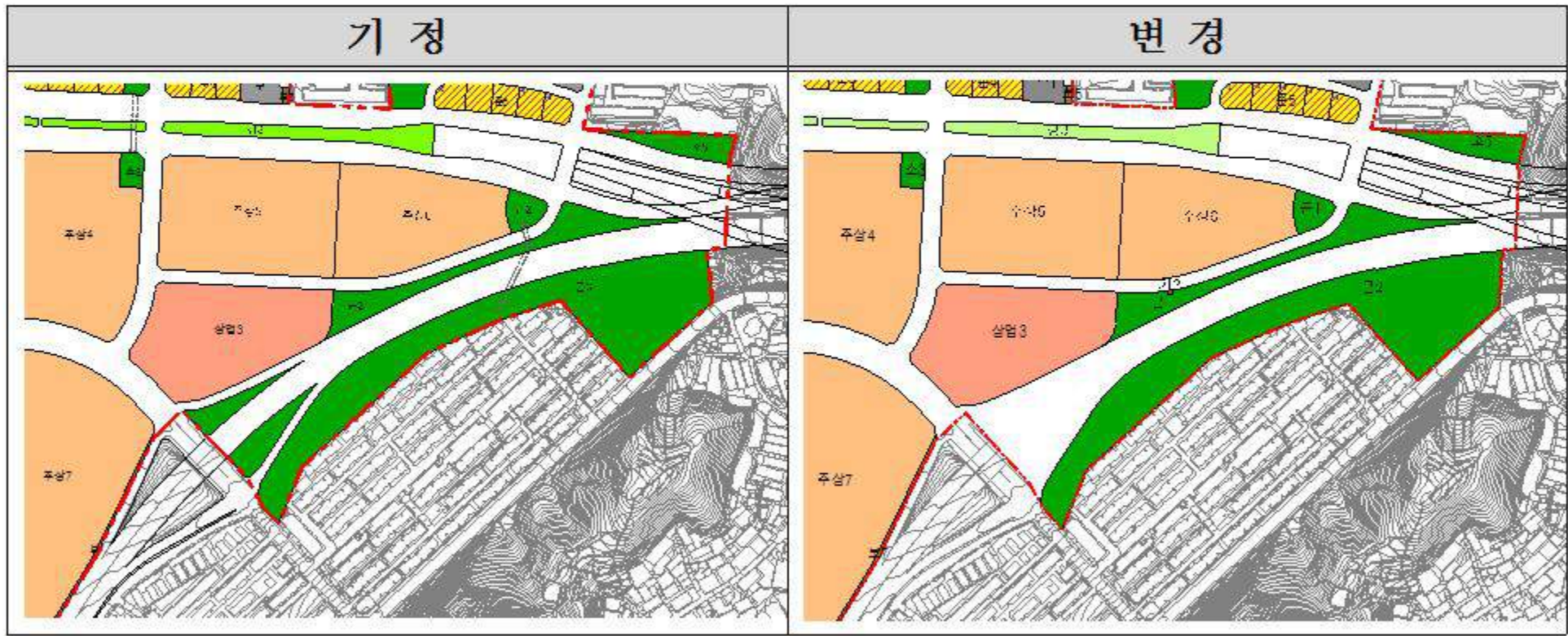


■ 공원/녹지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면적이 감소된 근린공원을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경
 - (변경사유) 근린공원 규모 : 1만㎡ 이상(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 (기정) 근린공원1 → (변경) 문화공원3



- 한국도로공사 협의의견에 따라 경인고속도로내 공원 폐지
 - (기정) 근린공원2 13,081㎡ → (변경) 근린공원1 10,805㎡ (감 2,276㎡)
 - (기정) 근린공원3 39,177㎡ → (변경) 근린공원2 36,770㎡ (감 2,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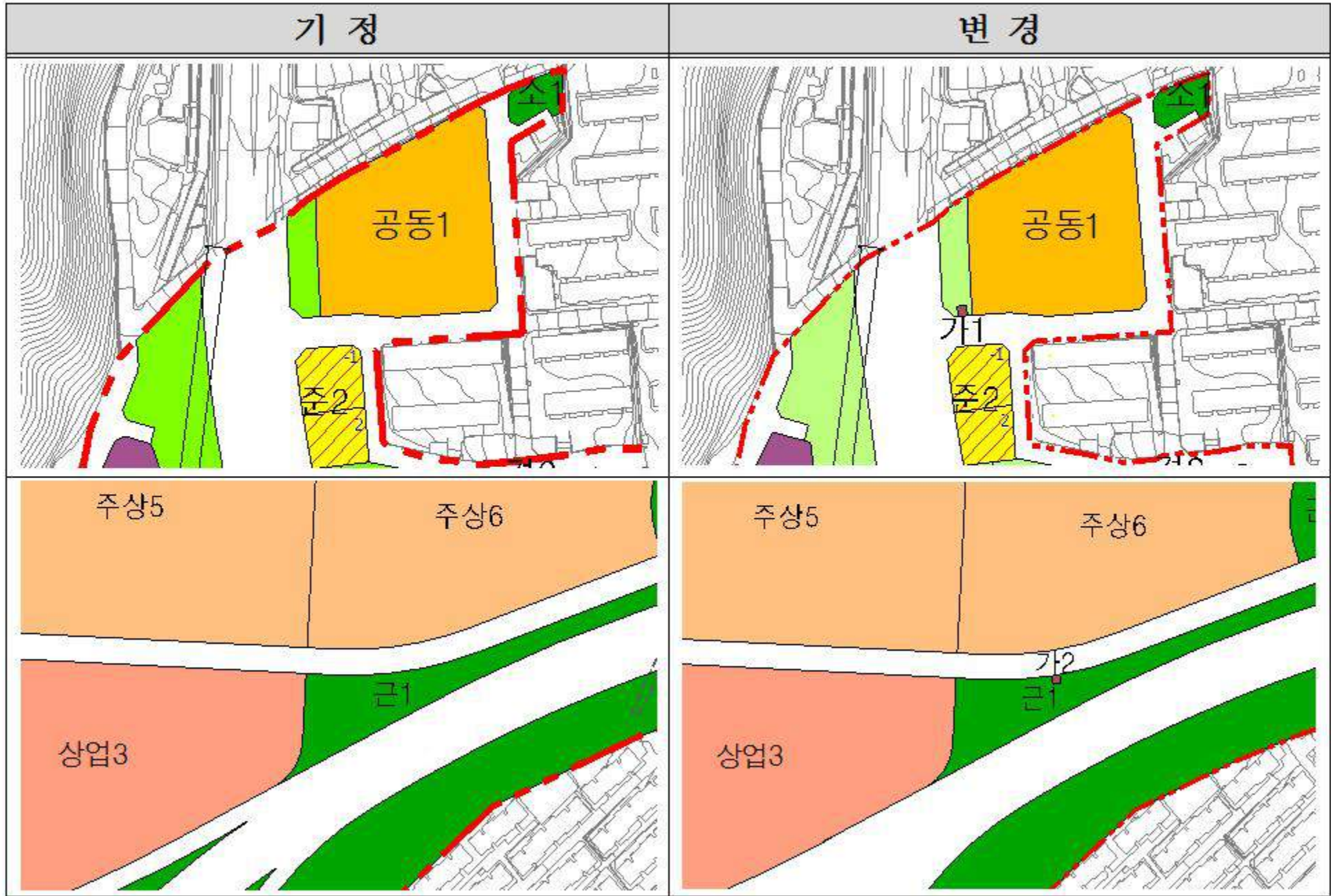


- 인천시 교육청 및 봉수초교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봉수초교 정문앞 어린이 공원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
 - (기정) 어린이공원2 3,867㎡ → (변경) 어린이공원2 2,894㎡ (감 973㎡)



■ 가스공급설비

- 사업지구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설비(가스정압기) 2개소 신설
 - (신설) 가스공급설비 2개소, 면적 50㎡(각각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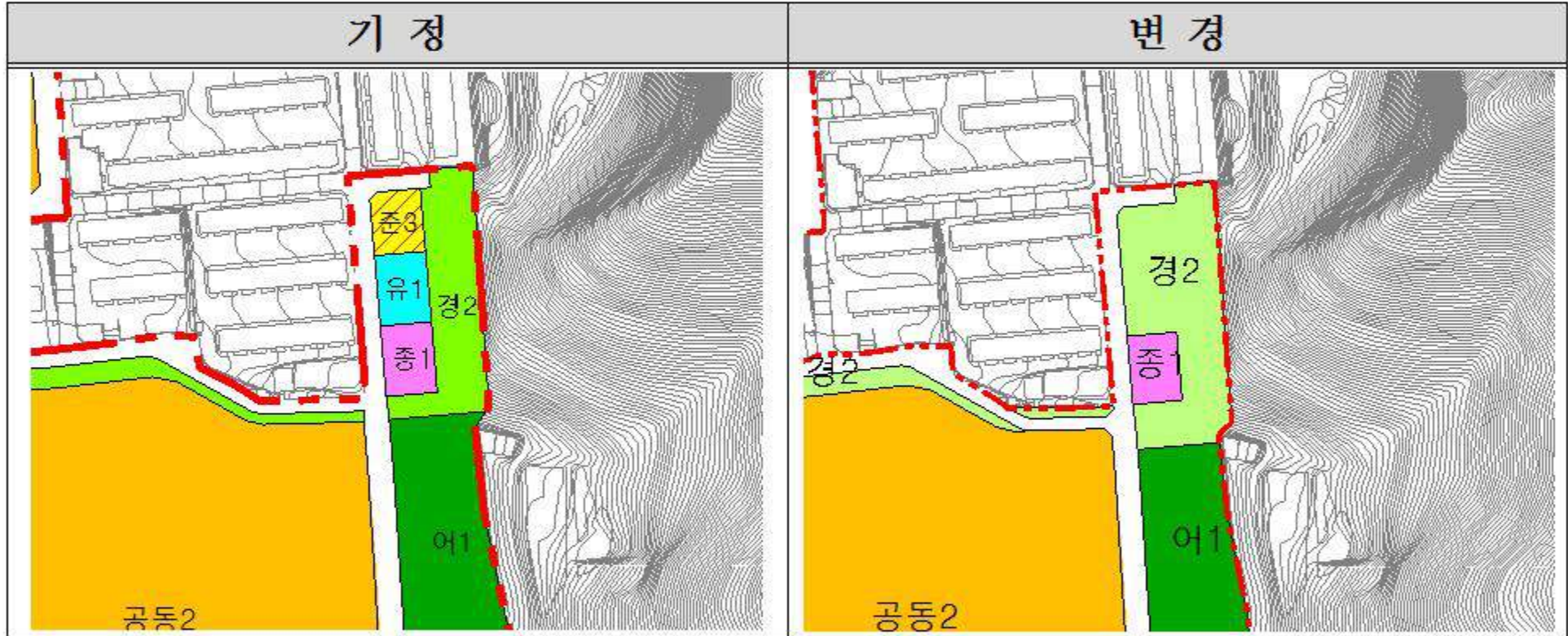
■ 교육시설

○ 인천시 교육청 및 봉수초교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봉수초교 정문앞 어린이 공원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

- (기정) 어린이공원2 (감 973㎡), 종로3-661호선 → (변경) 학교1 (1,389㎡)



-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유치원1 폐지
 - (기정) 유치원1 → (변경) 경관녹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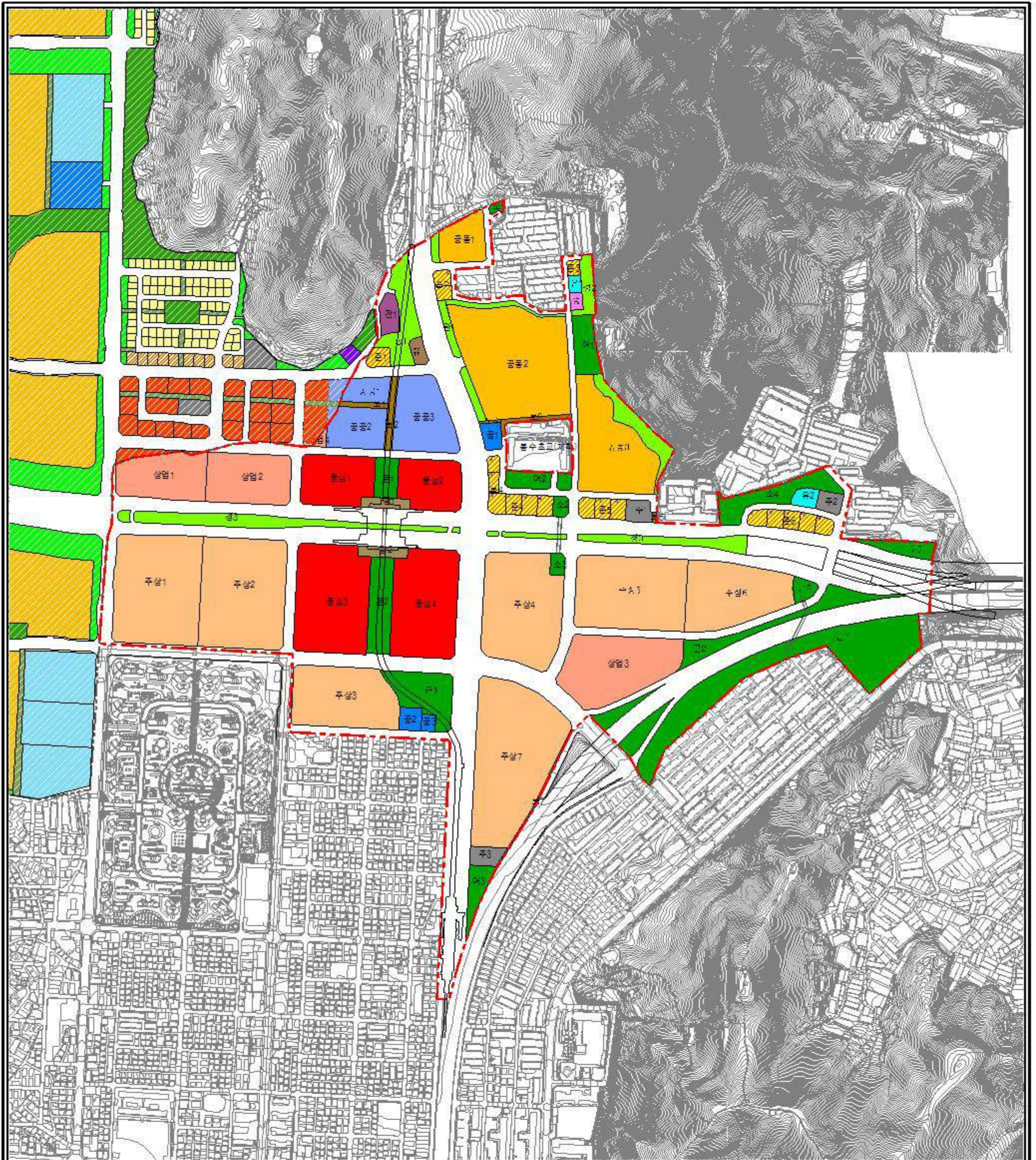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933,916	100.0	933,807	100.0	감) 109
주 거 용 지	93,204	10.0	92,259	9.9	감) 945
공동주택용지	73,462	7.9	73,333	7.9	감) 129
준주거시설용지	19,742	2.1	18,926	2.0	감) 816
상 업 용 지	387,010	41.4	380,732	40.8	감) 6,278
중심상업용지	80,550	8.6	80,550	8.6	-
일반상업용지	306,460	32.8	300,182	32.1	감) 6,278
주상복합용지	221,650	23.7	221,650	23.7	-
상업업무용지	56,465	6.0	51,418	5.5	감) 5,047
공공복합용지	28,345	3.0	27,114	2.9	감) 1,231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451,477	48.3	458,591	49.1	증) 7,114
도 로	287,262	30.7	294,510	31.5	증) 7,248
공 원 · 녹 지	144,317	15.5	143,509	15.4	감) 808
근 린 공 원	62,042	6.6	47,575	5.1	감) 14,467
어 린 이 공 원	12,571	1.3	11,080	1.2	감) 1,504
소 공 원	14,883	1.6	14,972	1.6	증) 89
문 화 공 원	11,950	1.3	21,734	2.3	증) 9,784
경 관 녹 지	38,691	4.1	44,007	4.7	증) 5,316
완 충 녹 지	4,180	0.4	4,154	0.4	감) 26
전 기 공 급 설 비	2,636	0.3	2,690	0.3	증) 54
가 스 공 급 설 비	-	-	50	0.0	증) 50
주 차 장	6,239	0.7	6,230	0.7	감) 9
학 교	-	-	1,389	0.1	증) 1,389
유 치 원	2,507	0.3	1,697	0.2	감) 810
광 장	3,816	0.4	3,816	0.4	-
공 공 청 사	4,700	0.5	4,700	0.5	-
기 타 시 설 용 지	2,225	0.2	2,225	0.2	-
종 교 용 지	811	0.1	811	0.1	-
주 유 소	1,414	0.2	1,414	0.2	-

주1) 도로면적은 도로 내 중복 결정된 경관녹지(22,751m²) 제외 면적임(도로 총면적 317,261m²)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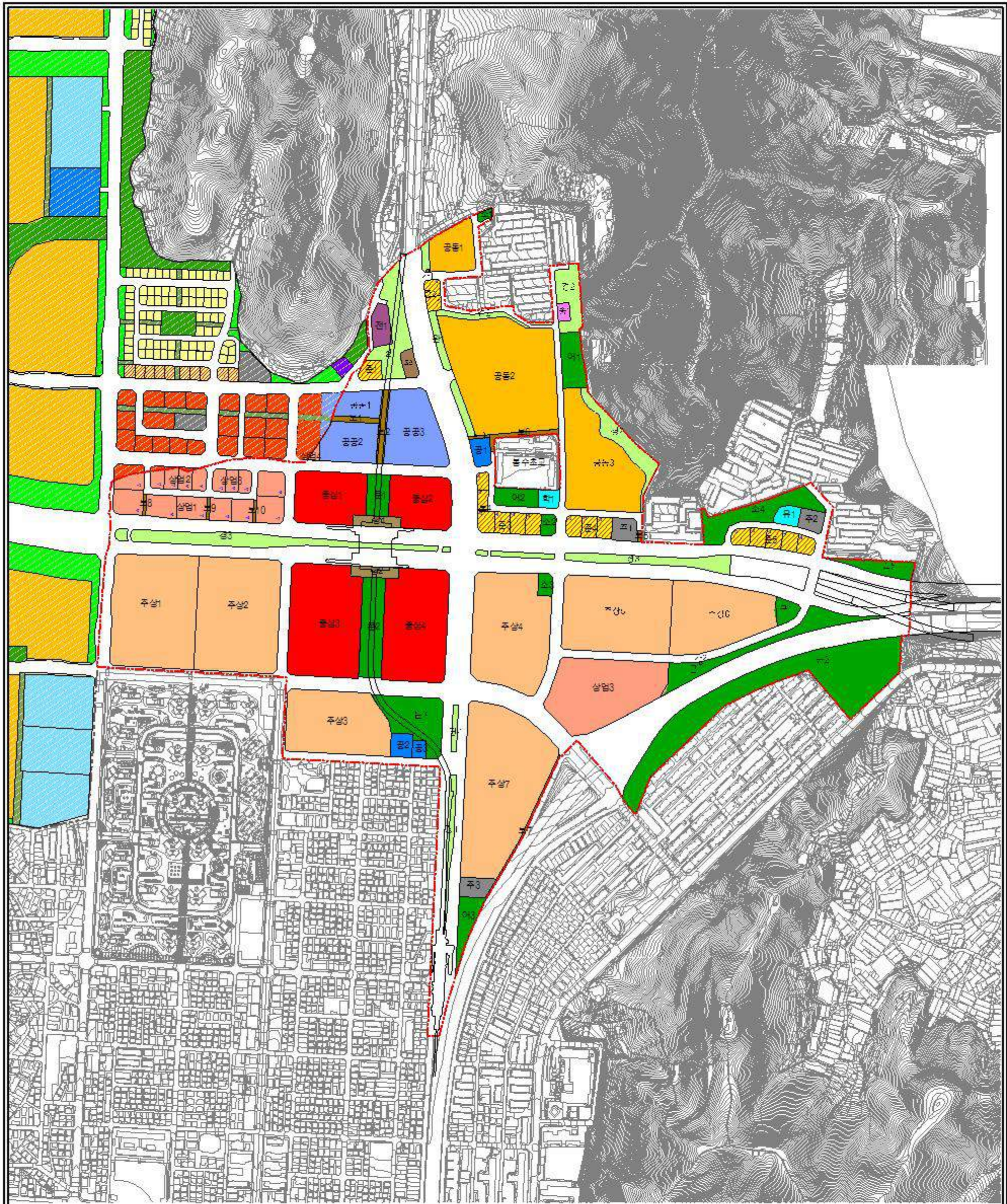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평면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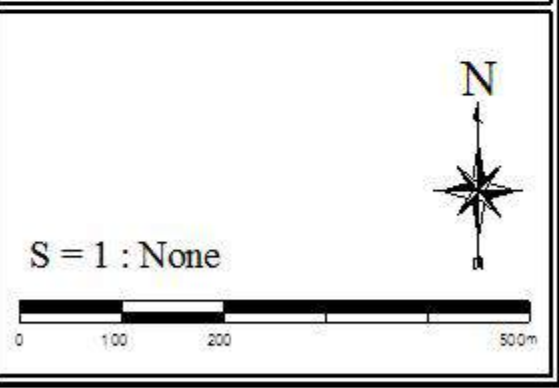
	주상8		주상1		주상2
	주상9		주상2		주상3
	주상10		주상3		주상4
	주상11		주상4		주상5
	주상12		주상5		주상6
	주상13		주상6		주상7
	주상14		주상7		주상8
	주상15		주상8		주상9
	주상16		주상9		주상10
	주상17		주상10		주상11
	주상18		주상11		주상12
	주상19		주상12		주상13
	주상20		주상13		주상14
	주상21		주상14		주상15
	주상22		주상15		주상16
	주상23		주상16		주상17
	주상24		주상17		주상18
	주상25		주상18		주상19
	주상26		주상19		주상20
	주상27		주상20		주상21
	주상28		주상21		주상22
	주상29		주상22		주상23
	주상30		주상23		주상24
	주상31		주상24		주상25
	주상32		주상25		주상26
	주상33		주상26		주상27
	주상34		주상27		주상28
	주상35		주상28		주상29
	주상36		주상29		주상30
	주상37		주상30		주상31
	주상38		주상31		주상32
	주상39		주상32		주상33
	주상40		주상33		주상34
	주상41		주상34		주상35
	주상42		주상35		주상36
	주상43		주상36		주상37
	주상44		주상37		주상38
	주상45		주상38		주상39
	주상46		주상39		주상40
	주상47		주상40		주상41
	주상48		주상41		주상42
	주상49		주상42		주상43
	주상50		주상43		주상44
	주상51		주상44		주상45
	주상52		주상45		주상46
	주상53		주상46		주상47
	주상54		주상47		주상48
	주상55		주상48		주상49
	주상56		주상49		주상50
	주상57		주상50		주상51
	주상58		주상51		주상52
	주상59		주상52		주상53
	주상60		주상53		주상54
	주상61		주상54		주상55
	주상62		주상55		주상56
	주상63		주상56		주상57
	주상64		주상57		주상58
	주상65		주상58		주상59
	주상66		주상59		주상60
	주상67		주상60		주상61
	주상68		주상61		주상62
	주상69		주상62		주상63
	주상70		주상63		주상64
	주상71		주상64		주상65
	주상72		주상65		주상66
	주상73		주상66		주상67
	주상74		주상67		주상68
	주상75		주상68		주상69
	주상76		주상69		주상70
	주상77		주상70		주상71
	주상78		주상71		주상72
	주상79		주상72		주상73
	주상80		주상73		주상74
	주상81		주상74		주상75
	주상82		주상75		주상76
	주상83		주상76		주상77
	주상84		주상77		주상78
	주상85		주상78		주상79
	주상86		주상79		주상80
	주상87		주상80		주상81
	주상88		주상81		주상82
	주상89		주상82		주상83
	주상90		주상83		주상84
	주상91		주상84		주상85
	주상92		주상85		주상86
	주상93		주상86		주상87
	주상94		주상87		주상88
	주상95		주상88		주상89
	주상96		주상89		주상90
	주상97		주상90		주상91
	주상98		주상91		주상92
	주상99		주상92		주상93
	주상100		주상93		주상94
	주상101		주상94		주상95
	주상102		주상95		주상96
	주상103		주상96		주상97
	주상104		주상97		주상98
	주상105		주상98		주상99
	주상106		주상99		주상100
	주상107		주상100		주상101
	주상108		주상101		주상102
	주상109		주상102		주상103
	주상110		주상103		주상104
	주상111		주상104		주상105
	주상112		주상105		주상106
	주상113		주상106		주상107
	주상114		주상107		주상108
	주상115		주상108		주상109
	주상116		주상109		주상110
	주상117		주상110		주상111
	주상118		주상111		주상112
	주상119		주상112		주상113
	주상120		주상113		주상114
	주상121		주상114		주상115
	주상122		주상115		주상116
	주상123		주상116		주상117
	주상124		주상117		주상118
	주상125		주상118		주상119
	주상126		주상119		주상120
	주상127		주상120		주상121
	주상128		주상121		주상122
	주상129		주상122		주상123
	주상130		주상123		주상124
	주상131		주상124		주상125
	주상132		주상125		주상126
	주상133		주상126		주상127
	주상134		주상127		주상128
	주상135		주상128		주상129
	주상136		주상129		주상130
	주상137		주상130		주상131
	주상138		주상131		주상132
	주상139		주상132		주상133
	주상140		주상133		주상134
	주상141		주상134		주상135
	주상142		주상135		주상136
	주상143		주상136		주상137
	주상144		주상137		주상138
	주상145		주상138		주상139
	주상146		주상139		주상140
	주상147		주상140		주상141
	주상148		주상141		주상142
	주상149		주상142		주상143
	주상150		주상143		주상144
	주상151		주상144		주상145
	주상152		주상145		주상146
	주상153		주상146		주상147
	주상154		주상147		주상148
	주상155		주상148		주상149
	주상156		주상149		주상150
	주상157		주상150		주상151
	주상158		주상151		주상152
	주상159		주상152		주상153
	주상160		주상153		주상154
	주상161		주상154		주상155
	주상162		주상155		주상156
	주상163		주상156		주상157
	주상164		주상157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평면도(변경)

	다목적개발지		민간개발지		연구개발지
	전주·신용지		우림개발지		주거개발지
	주상개발지		수목개발지		주거·상업지
	상업개발지		수목·개발지		주거·공업지
	상업·공업지		수목·개발지		주거·공업지
	상업·공업지		수목·개발지		주거·공업지



3.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계획

구 분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1	46	9,867	10,295	287,262	317,261			
일반도로	계	34	36	9,078	9,393	281,476	310,774		
	광로	소계	1	1	1,590	1,590	100,365	119,522	
		2 류	1	1	1,590	1,590	100,365	119,522	
	대로	소 계	6	6	3,278	3,278	120,479	124,125	
		1 류	2	2	1,728	1,728	81,368	76,604	
		2 류	1	1	686	686	25,060	33,681	
		3 류	3	3	864	864	14,051	13,840	
	중로	소 계	20	21	3,603	3,909	56,007	61,423	
		1 류	8	9	1,058	1,365	21,289	27,870	
		2 류	5	4	1,226	919	18,717	13,705	
		3 류	7	8	1,319	1,625	16,001	19,848	
	소로	소 계	7	7	607	616	4,625	5,704	
		1 류	1	1	140	140	1,375	1,647	
		2 류	5	5	444	453	3,091	3,921	
		3 류	1	1	23	23	159	136	
	보행자전용	계	7	10	789	902	5,786	6,487	
		중로	2 류	1	1	143	139	2,234	2,078
소로		소 계	6	9	646	763	3,552	4,409	
		1 류	1	1	94	94	937	937	
		2 류	2	2	182	182	1,489	1,468	
		3 류	3	6	370	487	1,126	2,004	

■ 주요 기반시설 계획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원	13	13	101,446	95,348	
녹지	4	5	42,871	48,161	
전기공급설비	1	1	2,636	2,690	
가스공급설비	-	2	-	50	
주차장	3	3	6,239	6,230	
학교	-	1	-	1,389	
유치원	2	1	2,507	1,697	
광장	2	2	3,816	3,816	변경없음
공공청사	3	3	4,700	4,700	변경없음

II 실시계획(변경)

1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루원시티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933,916	감)109	933,807	• 예정지적좌표 결정(변경)에 따른 구역계 면적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33,916.0	감)109	933,807	100.0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의 예정지적좌표 결정(변경) 및 일부 도로 폭원 확폭에 따라 용도 지역 면적 등 변경	
주거 지역	소계	304,680	감)997	303,683		32.5
	제1종일반주거지역	16,129	증)87	16,216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59,052	감)3	59,049		6.3
	제3종일반주거지역	5,805	감)3	5,802		0.6
	준주거지역	223,694	감)1,078	222,616		23.9
상업 지역	소계	629,039	증)876	629,915		67.4
	중심상업지역	140,388	증)1,037	141,425		15.1
	일반상업지역	488,651	감)161	488,490		52.3
녹지 지역	소계	197	증)12	209		0.1
	자연녹지지역	197	증)12	209		0.1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 도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907	중로 1-666	• 도로 폭원 변경 -연장 307m, -폭원 15m→20m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 폭원 변경
중로 2-909	중로 2-909	• 도로 연장 변경 -연장 143m→139m, -폭원 15m	• 연접한 중로 2-907호선 폭원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중로 3-661	-	• 도로 폐지 -연장 34m, -폭원 12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	중로 3-665	• 도로 신설 -연장 298m, -폭원 12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666	• 도로 신설 -연장 42m, -폭원 12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5	• 도로 신설 -연장 39m, -폭원 6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6	• 도로 신설 -연장 42m, -폭원 6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7	• 도로 신설 -연장 39m, -폭원 6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주차장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2,100㎡ → 2,091㎡(감 9㎡)	• 도시개발구역 구역계 변경(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광 장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교통광장	• 교통광장내 중복 결정된 공원 폐지 - 근린공원 면적 축소에 따른 중복결정 해지(면적:4,683㎡)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폐지

■ 녹 지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1	• 시설(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4,180㎡ → 4,154㎡ (감 26㎡)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
경관녹지1	• 시설(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8,640㎡ → 8,581㎡ (감 59㎡)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
경관녹지2	• 시설(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0,985㎡ → 12,675㎡ (증 1,690㎡)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
경관녹지4	• 시설(경관녹지) 신설 - 면적 : 3,685㎡	• 공원녹지면적 확보를 위한 서곶로 중앙 녹지 반영

■ 공 원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공원1	• 공원 시설 변경 - 근린공원1 → 문화공원3	• 공원면적 기준에 따른 공원 분류 변경 * 근린공원 : 1만㎡ 이상, 문화공원 : 면적제한없음
근린공원2	• 시설번호 및 면적 변경 - 근린공원2 → 근린공원1 - 면적 : 13,081㎡ → 10,805㎡ (감2,276㎡)	• 근린공원1 공원 분류 변경에 따른 시설번호 변경
근린공원3	• 시설번호 및 면적 변경 - 근린공원3 → 근린공원2 - 면적 : 39,177㎡ → 36,770㎡ (감2,407㎡)	• 근린공원1 공원 분류 변경에 따른 시설번호 변경
어린이공원1	• 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5,086㎡ → 4,573㎡ (감513㎡)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어린이공원2	• 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3,867㎡ → 2,894㎡ (감973㎡)	• 학교용지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
어린이공원3	• 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3,618㎡ → 3,600㎡ (감18㎡)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소공원1	• 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523㎡ → 511㎡ (감12㎡)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소공원4	• 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8,559㎡ → 8,662㎡ (증103㎡)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소공원5	• 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3,491㎡ → 3,489㎡ (감2㎡)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 전기공급설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전기공급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면적 : 2,636㎡ → 2,690㎡ 증)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면적 변경

■ 가스공급설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스공급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공급설비 신설(2개소) - 면적 : 50㎡(각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내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설비 신설

■ 학 교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신설 - 면적 : 1,3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용지 추가 확보 요청(교육청)에 따른 학교용지 일부 확보
유치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폐지 - 유치원 폐지 - 면적 :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평가 부적합에 따른 유치원 폐지
유치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번호 변경 - 유치원2 → 유치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1 폐지에 따른 시설 번호 변경

③ 가구 및 획지 규모와 구성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 준주거시설용지

기정				변경				증감 (㎡)	변경사유
가구번호	면적 (㎡)	획지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번호	면적 (㎡)		
합계	19,742	-	19,742	합계	18,926	-	18,926	감)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면적 확보를 위한 준주거3 삭제
준1	1,535	-1	1,535	준1	1,537	-1	1,537	증)2	
준2	1,845	-1	1,013	준2	1,743	-1	965	감)48	
		-2	832			-2	778	감)54	
준3	716	-1	716	-	-	-	-	감)716	
준4	6,456	-1	745	준3	6,456	-1	745	-	
		-2	745			-2	745	-	
		-3	1,321			-3	1,321	-	
		-4	1,215			-4	1,215	-	
		-5	1,215			-5	1,215	-	
		-6	1,215			-6	1,215	-	
준5	3,586	-1	1,196	준4	3,586	-1	1,196	-	
		-2	1,195			-2	1,195	-	
		-3	1,195			-3	1,195	-	
준6	5,604	-1	1,116	준5	5,604	-1	1,116	-	
		-2	1,122			-2	1,122	-	
		-3	1,122			-3	1,122	-	
		-4	1,122			-4	1,122	-	
		-5	1,122			-5	1,122	-	

■ 공동주택용지

기정		변경		증감(㎡)	변경사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합계	73,462	합계	73,333	감)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공동1	7,424	공동1	7,301	감)123	
공동2	41,802	공동2	41,796	감)6	
공동3	24,236	공동3	24,236	-	

■ 상업업무용지

기정				변경				증감 (㎡)	변경사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획지 번호	면적 (㎡)			획지 번호	면적 (㎡)				
	56,465	-	56,465		51,418	-	51,418	감)5,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민원제기 및 상업용지 공급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필지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상업1	14,798	-	14,798	상업1	18,254	-1	1,598	증)3,456			
						-2	2,740				
						-3	2,516				
						-4	2,515				
						-5	1,820				
						-6	1,820				
						-7	2,734				
						-8	2,511				
상업2	15,758	-	15,758	상업2	4,181	-1	933	감)8,361			
						-2	1,059				
						-3	1,040				
						-4	1,149				
						상업3	3,216			-1	1,072
										-2	1,072
						-3	1,072				
상업3	25,336	-	25,336	상업4	25,322	-	25,322	감)14			
상업4	573	-	573	상업5	445	-	445	감)128			

■ 공공복합업무용지

기정		변경		증감(㎡)	변경사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합계	28,345	합계	27,114	감)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확폭에 따른 면적 축소
공공1	4,184	공공1	4,186	증)2	
공공2	8,658	공공2	8,097	감)561	
공공3	15,503	공공3	14,831	감)672	

■ 전기공급설비용지

기정		변경		증감(㎡)	변경사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합계	2,636	합계	2,690	증)50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전1	2,636	전1	2,690	증)50	

■ 가스공급설비용지

기정		변경		증감(㎡)	변경사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	-	합계	50	증)50	• 관계기관(인천도시가스) 협의 결과에 따른 가스정압기 부지 신설
-	-	가1	25	증)25	
-	-	가2	25	증)25	

■ 주차장용지

기정		변경		증감(㎡)	변경사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합계	6,239	합계	6,230	감)9	• 예정지적좌표 변경에 따른 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주1	2,100	주1	2,091	감)9	
주2	1,878	주2	1,878	-	
주3	2,261	주3	2,261	-	

■ 학교용지

기정		변경		증감(㎡)	변경사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합계	-	합계	1,389	증)1,389	• 학교용지 추가 확보 요청(교육청)에 따른 학교용지 일부 확보
-	-	학1	1,389	증)1,389	

■ 유치원용지

기정		변경		증감(㎡)	변경사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합계	2,507	합계	1,697	감)810	• 교육환경평가 부적합에 따른 유치원1 삭제
유1	810	-	-	감)810	
유2	1,697	유2	1,697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변경

■ 준주거시설용지

○ 변경사유

- 공원녹지면적 확보를 위한 준주거3 삭제
- 복층 및 준이층구조로 조성할 수 없도록 1층 높이를 4.8m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준주거시설용지 단차(약 1~2m) 등 지형여건으로 인하여 1층 높이 4.8m이하 규정을 만족 못하는 필지가 발생되어 2m이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반영

○ 변경내용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준1 ~ 준6	위치	기정	준1 ~ 준6		
		변경	준1 ~ 준5		
	용도	허용	• 변경없음		
		불허	• 변경없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정	• 35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변경	• 350% 이하	• 300% 이하	
	높이 (층수)	기정	• 7층 이하	• 6층 이하	• 5층 이하
		변경	• 7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 블럭	기정	• 준1,2,4,5	• 준3	• 준6
		변경	• 준1 ~ 준4	• 준5	
	배치 및 건축선		• 변경없음		
	형태 및 외관		• 변경없음		
준1 ~ 준6	형태 및 외관		• 1층 조성 < 기 정 > - 준주거시설용지의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1개층 높이는 4.8미터 이하로 하며, 복층 또는 준이층 구조로 조성할 수 없다. < 변 경 > - 준주거시설용지의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1개층 높이는 4.8미터 이하로 하며, 복층 또는 준이층 구조로 조성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2m 범위 내 완화적용 할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 변경없음		
	기타		• 변경없음		

■ 상업업무용지

○ 변경사유

- 지구 내 원주민 이주대책마련을 위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하여 대상자들로부터 소규모 필지 공급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대규모 필지에 대한 공급 리스크 등을 해소하여 상업용지 공급활성화를 위한 상업1,2 소규모 획지 분할

○ 변경내용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 상업4	위치	상업1 ~ 상업5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기정	• 600% 이하	• 600% 이하	• 600% 이하	• 700% 이하
		변경	• 700% 이하	• 600% 이하	• 600% 이하	• 700% 이하
	높이 (층수)	기정	• 180m 이하	• 200m 이하	• 200m 이하	-
		변경	-	• 200m 이하	• 200m 이하	-
	해당 블럭	기정	• 상업1	• 상업2	• 상업3	• 상업4
		변경	• 상업1 ~ 상업3	-	• 상업4	• 상업5

■ 가스공급시설

○ 변경사유

- 가스공급시설 별도 확보 요청(인천도시가스)에 따른 가스정압시설 2개소 반영

○ 변경내용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1~가2 <신설>	용도	허용	• 가스정압시설 및 그 부속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용지

○ 변경사유

- 학교용지 추가 확보 요청(인천광역시교육청)에 따른 학교용지 일부 반영

○ 변경내용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학1 <신설>	위치		학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와 그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 주유소용지

○ 변경사유

- 법령개정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변경사항 등 반영(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변경내용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	위치		주유1
	용도	허용 (주용도)	<p>< 기 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설비 포함) 및 부속용도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에 명기한 시설 <p>< 변 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설비 포함) 및 부속용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명기한 시설
		허용 (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없음

■ 주차장용지

○ 변경사유

-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등)에 대한 허용용도 반영

○ 변경내용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1 ~ 주3	위치	주1 ~ 주3
	용도 허용 (주용도)	< 기 정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 변 경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가능)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한 부대시설
	허용 (부용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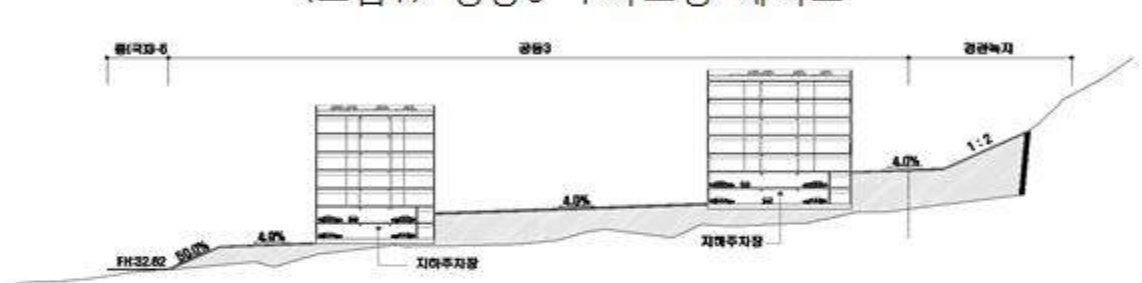
④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유

- 공동주택용지 구성과 관련하여 지형여건을 감안한 사면처리 등의 문구 일부 수정

○ 변경내용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1 ~ 공동3	환경부문 및 기타에 관한 사항	• 부지 조성 < 기 정 > - 천마산 구릉지와 인접한 공동3은 부지조성 시 <그림1>과 같이 지형단차를 고려하여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1> 공동3 부지조성 예시도  < 변 경 > - 천마산 구릉지와 인접한 공동3은 부지조성 시 <그림1>과 같이 지형단차를 고려하여 인접한 경관녹지와 높이차가 최소화 되도록 부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1> 공동3 부지조성 예시도 